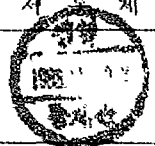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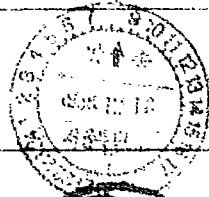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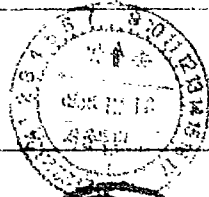


기안용지

(전화: 731-6358)

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
| 분류기호 문서번호 | 제개 30321- <i>제</i> | | 시행상 특별취급 | |
| 모 존 기 간 | 영구 준영구. 10. 3. 1. | 시 장 | | |
| 수 신 처 모 존 기 간 | 5년 | | | |
| 시행일자 | 85. 9. 9 | <i>김영구</i> | | |
| 보 조 기 관 | 도시 계획 국장 전결 | 회 조 기 관 | 법무 담당관 | 문 서 통 제  |
| | 재개발과장 | | 재개발행정계장 | |
| | 사업1계장 | | 재개발사업2계장 | |
| 기안책임자 | | | | 발 송 인  |
| 경 유 수 신 참 조 | 각안참조 | 발 신 명 의 | 시 장 |  |
| 세 목 | 도시 계획 재개발구역 실효고시 | <i>88. 12. 13</i> | | |
| (제1안) 내부결재 | | <i>88. 12. 12</i> | | |
| 1. 건설부 고시 제345호(79.9.21)로 재개발구역 지정된 | | | | |
| 구역중 신 주택지 및 경사지로서 토지이용 계획상 불합리한 사유로 건설부 고시 | | | | |
| 제412호(81.11.13)로 사업계획 결정시 제척된, 마포구 공덕동 105-130, 아현 | | | | |
| 동 604-24일대에 대하여, | | | | |
| 2. 구역 지정 고시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 결정이 없었기, 도시재개발 | | | | |
|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만료로 그 효력이 상실된바, 동법 제5조 | | | | |
|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효고시와 동시 재개발구역 해제 코자합니다. | | | | |
| 가. 실효고시 내역 | | | | |

| 구분 | 구역명칭 | 위 치 | 면 적 | 고시근거 | 비 고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실 효 | 마포로제3구역 | 마포구 공덕동105-130 번지 일대 | 5,993m ² | 건설부 고시 제345호 | 신주택지 |
| | | 마포구 아현동 604-24일대 | 5,627m ² | (79.9.21) | 경사지로 토 지 이용계획 불합리. |
| (2안) | | | | | |
| 수신 | : 총무처장관, 통보관 | | | | |
| 제목 | : 관보 게재 의뢰. | | | | |
| 1. 건설부 고시 제345호(79.9.21)로 재개발구역 지정된 마포로 제3 구역 중 일부가 재개발구역 지정이 실효되어 별첨과 같이 고시 되었기 관보게재 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 |
| 가. | 게재종별 | : 고시문 | | | |
| 나. | 게재건명 | : 도시계획 재개발 구역 지정실효 | | | |
| 다. | 법적근거 | :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4항. | | | |
| 첨부 | : 고시문 사본 2부. | | | | |
| (제3안) | | | | | |
| 수신 | : 건설부 장관 | | | | |
| 참조 | : 도시개발과장 | | | | |
| 제목 | : 동건 | | | | |
| 1. 귀부고시 제345호(79.9.21)로 재개발 구역지정된 마포로제3 | | | | | |

구역 중 일부가 재개발 사업계획 입안시효만료로, 재개발구역 지정의 효력이

실~~현~~케 됨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

규정에 의거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실효고시 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.

(제4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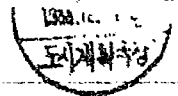
수신 : 수신처 참조

제목 : 동건

1. 건설부 고시 제345호(79.9.21)로 재개발구역 지정된 마포로 제 3구역중 일부가 재개발사업계획 입안 시효 만료로, 별첨과 같이 실효 고시함과 동시에 구역해제 조치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하고 업무에 참고 하기 바람.

첨부 : 1. 구역지정 실효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.

수신처 : 도시계획과, 시설 계획과, 마포(도시정비과)



3119

고 시 (안)

서울특별시 고시 제 47 호

도시계획 재개발구역 지정 실효고시.



1. 건설부 고시 제345호(79.9.21)로 재개발구역 지정된 마포로 제3구역중 아래지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이 없어 동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합니다.

1988. 12.

서울특별시 장

가. 실효 고시내역

| 구분 | 구역명칭 | 위 치 | 면 적 | 고시근거 | 비 고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실효 | 마포로 제3구역 | 마포구 공덕동105-130 번지 일대 | 5,993m ² | 건설부고시 제345호 (79.9.21) | 신주역지 |
| | | 마포구 아현동 604-24 일대 | 5,627m ² | | 경사지로 토지이용 계획 불 합리 |